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03
----------	-----

2015년 6월 2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6월 2일, 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찬성자 22명)
-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3일
-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5년 6월 23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조상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보도상영업시설물 불법 전매·전대행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증명서 관련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을 정비하고 도로법 전부개정('14.7.15.)에 따라 변경된 조문 정리 및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설물 불법 전매·전대행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 관련 벌점을 강화하고 사전에 운영자증명서(사진포함)에 등재된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6항, 제9조제3항제4호,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도로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조문정리 및 직제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 별지 서식의 계약서에 표기된 ‘갑’, ‘을’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별지 제3호서식)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사진이 부착된 운영자 증명서를 시설물의 내·외부에 게시하여 일반시민 또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상시 감시를 제고하는 한편,
- 운영자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타인이 운영하는 것을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포상금제도 신설과 운영자의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불법 전대·전매 등 조례위반 행위에 보다 강력

히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기타, 도로법 전부개정('14.7.15)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 조문 정리 및 직제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별지 서식의 계약서에 표기된 '갑'과 '을'의 용어를 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운영자증명서 게시 강화 및 신고자 포상제도 신설 관련(안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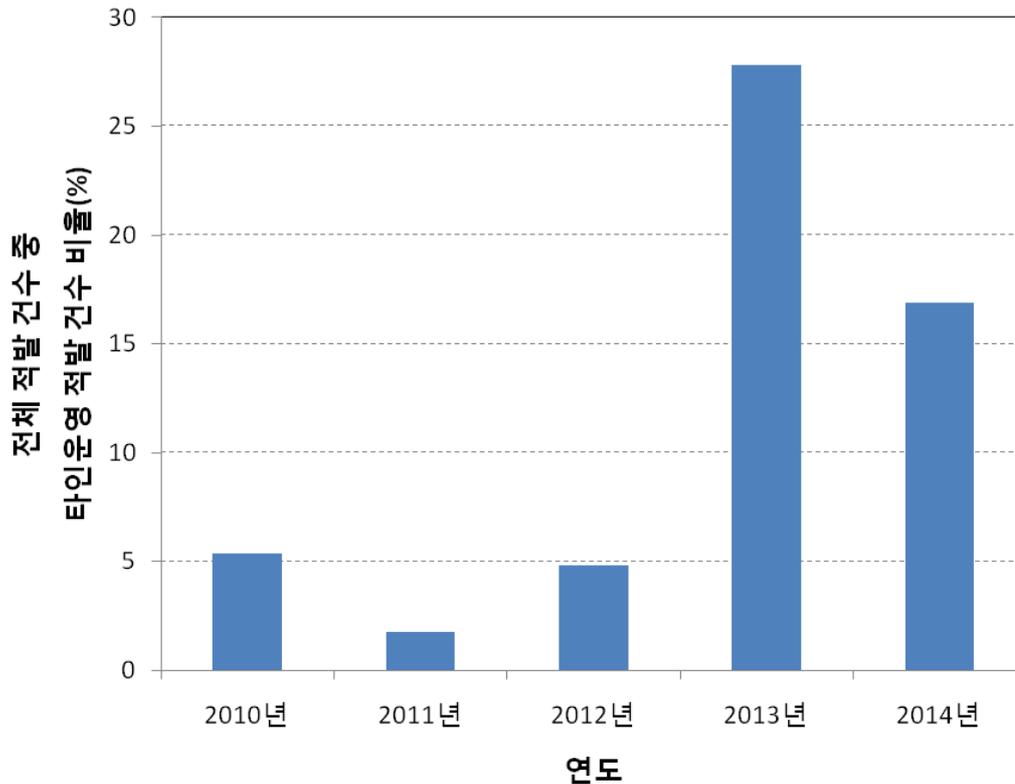
- 현행 제7조제1항에서 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운영자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를 시설물에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운영자증명서 게시 위치가 불명확한 관계로 현장에서는 대부분 운영자가 소지하고 있거나 게시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수 없는 내부에 게시하고 있어 '누구나 확인'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때문에 운영자증명서 상에 등재된 운영자(대리운영자 1명 포함)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이를 간파하기 어려워 불법 전대·전매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 본 개정안과 같이 운영자증명서를 기존 제6호 서식(내부 게시용)과 별개로 외부에 게시할 수 있는 제7호 서식(외부 게시용)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운영한다는 단서규정을 명문화하는 한편,
- 같은 조 제2항에 게시장소를 현행 '시설물'에서 '시설물 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로 보다 구체화하여 누구나 운영자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등재된 자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경우나 운영자증명서를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를 신고하는 자에게 시장이 정한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지금의 고질적인 불법 전대·전매 행위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본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구청의 단속의지가 관건인 만큼 현행 조례 제7조제5항의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1] 최근 5년간 위반행위 적발 및 조치 내역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계	
시설물 현황	계	2659	2550	2428	2339	2297		
	가로판매대	1363	1284	1210	1149	1121		
	구두수선대	1296	1266	1218	1190	1176		
위반 행위 적발 내역	타인 운영	가로판매대	14	12	19	65	41	151
		구두수선대	9	2	3	24	9	47
	장기 폐점	가로판매대	1	7	3	10	4	25
		구두수선대	-	1	2	2	-	5
	불법 구조 변경	가로판매대	70	78	24	6	25	203
		구두수선대	10	42	10	1	-	63
	음식물 조리	가로판매대	105	182	146	47	47	527
		구두수선대	101	395	193	124	112	925
	기타	가로판매대	101	395	193	124	112	925
		구두수선대	118	78	59	41	58	354
조치 결과	시정 명령 및 벌점 부과	가로판매대	277	555	346	218	156	1552
		구두수선대	121	108	61	48	40	378
	허가 취소	가로판매대	4	4	3	24	5	40
		구두수선대	5	2	2	15		24
	기타	가로판매대	14	117	37	19	68	255
		구두수선대	13	18	11	7	27	76



(그림 1) 위반행위 전체 적발건수 중 타인운영 적발건수 비율(%)

■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상향조정 관련(안 별표 2)

- 현행 조례 제9조는 운영자의 행위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해당 허가기간(1년 이내) 중 누적벌점이 120점 이상이면 즉시 점용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본 개정안은 현행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벌점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표 2]와 같이 사안에 따라 벌점을 상향조정하고 있음.

[표 2]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상향조정안

위 반 행 위	현행	개정안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승인 없이 15일 이상 폐점 행위 • 등록자 외에 타인이 운영하게 하는 행위 •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판매 •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 판매 • 음식물 조리 및 판매 •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 구두수선대에서 구두 또는 열쇠 이외의 물품 취급 • 구두수선대에서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벌점 30점	벌점 40점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증명서 게시하지 않는 경우 	벌점 10점	벌점 40점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구조 변경 또는 훼손 • 점용면적 외 공간에 상품·물건 적치 또는 판매 • 시설물 외벽에 과다 진열 후 외부에서 영업 	벌점 20점	벌점 30점	+10 ↑

○ 본 개정안대로라면 운영자증명서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현행 벌점 10점에서 40점으로 대폭 조정되고 현행 벌점 30점과 20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점을 상향하여 각각 40점과 30점으로 조정되게 됨.

○ 따라서, 운영자증명서 게시 의무 불이행 등 벌점 40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허가기간(1년 이내) 중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누적벌점 120점이 되어 점용허가가 즉시 취소되기 때문에 그동안 벌점에 대해 무감각하여 운영자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금지행위를 무시하던 일부의 행태들이 상당부분 계도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사회취약계층의 순수 생계형 노점이 되어야 하는 보도상영업시

설물이 그동안 불법 전대·전매나 각종 조례 위반행위들이 빈번하면서 개인사유화나 재산축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본 개정안 취지는 의미가 크다 하겠음.

- 그러나 그동안 제도의 허점 보다는 관리청인 서울시와 구청의 단속의지 부족과 지도·감독 부실 등이 지금의 불합리를 낳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바,
- 향후 관리청의 엄격한 법집행, 시·구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담당공무원의 정기교육,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등 각종 강력한 관리대책의 마련과 시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위반행위 적발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는? (김동율 위원)

답변) 벌점이 낮아 엄격한 시정조치를 취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음.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임.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

질의)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단속 실시 빈도는? (문종철 위원)

답변) 월 1회 실시하는 것 외에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

질의) 장기 폐점이 발생하는 사유는? (문종철 위원)

답변) 대부분이 수익 감소가 주원인인 것으로 생각됨.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

질의) 시와 구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임. (문종철 위원)

답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좋은 지역에 특별한 관리·단속을 실시할 것임.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

질의) 벌점 상향 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는? (이석주 위원)

답변) 일부 수익이 높은 지역의 불법 운영자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순수 생계형 운영자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됨.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

질의)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대·전매의 양수인 피해에 대한 대책은? (조상호 위원)

답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전대·전매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양수인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사진이 부착된 운영자증명서 내·외부 부착, 벌점 상향조정 등이 신설되는 만큼, 시 및 각 자치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개정사항에 대해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03
----------	--------

제안일자 : 2015년 6월 23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안에 운영자증명서 내·외부 부착, 벌점 상향조정 등이 신설되는 만큼 시 및 각 자치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개정사항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도록 함.

2. 주요골자

가. 안 제7조와 안 별표2의 개정사항에 대해선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안 부칙).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6항, 별표2 개
정사항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u>《부칙 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u>부 칙</u></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제1조(시행일) 이 조 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제2조(경과규정) 제7 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6항, 별표2 개 정사항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시설안전정책관”을 “도시안전기획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증명서에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의 사진을 첨부하여 등재하여야 하며,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장이 정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 내에 설치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별표2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6항, 별표2 개정사항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보도상영업시설물 벌점부과 기준(제10조 관련)

위 반 행 위	관련규정	벌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5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단,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시설물을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3.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행위 4.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5.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행위. 다만,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6.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7. 구두수선대에서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가공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밖의 물품을 취급·판매하는 행위 8. 구두수선대에서의 제9조제3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9. 시설물의 지정된 장소에 운영자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p>제9조제3항제3호</p> <p>제9조제3항제4호</p> <p>제9조제3항제5호 가목</p> <p>제9조제3항제5호 나목</p> <p>제9조제3항제5호 다목</p> <p>제9조제3항제5호 라목</p> <p>제9조제3항제6호 가목</p> <p>제9조제3항제6호 나목</p> <p>제7조제2항</p>	4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허가받은 점용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물건을 적치·판매하는 행위 3. 시설물 외벽에 상품 등을 과다 진열한 후 시설물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p>제9조제2항</p> <p>제9조제3항제1호</p> <p>제9조제3항제2호</p>	3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p>제7조제3항</p>	10

(별지 제3호서식)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구청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이하 “임차자”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대부자”가 시설물을 “임차자”에게 대부하고 “임차자”가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대부자”와 “임차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대부자”가 “임차자”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종류 ()	관리번호	○○○○년 - ○○구 - ○○○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주요건물명 기재)
	시설물 규격	가로 (m)×세로 (m)×높이 (m)
	취급품목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 “임차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자”는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정한 취급품목 등 대부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2. 시설물의 전매·전대·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3.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4. “임차자”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5. 시설물 외부(지붕포함)에 상품이나 그 밖에 물건의 진열·적치 금지
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시 제시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7조(취급 금지품목) “임차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대부자”의 사전 승

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4.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제8조(공과금) “임차자”는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임차자”는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임차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부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갱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만료 30일전까지 계약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대부자”는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대부자”는 “임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자”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

1. “임차자”가 납부기한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대부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조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의2(대부료의 환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대부자”는 “임차자”가 해당 계약에 의해 납부한 연간 대부료 중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임차자”에게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대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① “대부자”와 “임차자”는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부자”와 “임차자”의 화해사항을 “대부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 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

② 화해비용은 “대부자”와 “임차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부자”와 “임차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대부자) : 서울특별시 ○○○구 청 장 ○○○ (인)

임차인(임차자) :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생년월일 :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 운영자 증명서(내부용)

- 관리번호
- 운영기간 ~
- 장 소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주요건물 기재)
- 취급품목
- 운 영 자

천 연 색 사 진 (가로5cm×세로7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압인	천 연 색 사 진 (가로5cm×세로7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성 명 >		< 성 명 >
<운영자 본인>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

위 사람은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 이 시설물은 조례 제5922호에 따라 위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신고처 : ○○구청 ○○과 ☎ 02-0000-0000)

※규격 : 17cm × 20cm

유 의 사 항

1.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이 증명서를 게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의 사용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전대·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장소를 이전해서도 아니 됩니다.
3.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 운영자 증명서(외부용)

- 관리번호
- 취급품목
- 운영자

<p>천 연 색 사 진 (가로9cm×세로12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p>
<p>< 성 명 ></p>
<p><운영자 또는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p>



※ 이 시설물은 조례 제5922호에 따라 위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신고처 : ○○구청 ○○과 ☎ 02-0000-0000)

※규격 : 17cm × 20cm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p> <p>①~② 1. (생략)</p> <p>2.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u>시설안전정책관</u>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시설물 관리)</p> <p>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u>제6호</u> 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영자증명서를 <u>시설물에</u>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③~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p> <p>①~② 1. (현행과 같음)</p> <p>2. ----- -----<u>도시안전기획관</u> ----- ----- -----.</p> <p>제7조(시설물 관리)</p> <p>① ----- ----- ----- ----- ----- -----<u>제6호 및 제7호</u> ----- -----<u>이 경우 운영자증명서에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의 사진을 첨부하여 등재하여야 하며,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u> -----</p> <p>② ----- ----- <u>시설물 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u>----- -----.</p> <p>③~⑤ (현행과 같음)</p> <p>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을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시장이 정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제9조(행위의 금지) ①~② (생략)

③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3. (생략)

4. 시설물을 운영자 또는 그 직계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제11조(허가취소)

1.~4. (생략)

5. 「도로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2(대부계약의 해제·해지)

1.~2. (생략)

3. 「도로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시설물 철거)

① 1.~2.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 내에 설치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도로법」 제6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부칙 신설》

제9조(행위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3. (현행과 같음)

4. -----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

제11조(허가취소)

1.~4. (현행과 같음)

5.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 -----

제11조의2(대부계약의 해제·해지)

1.~2. (현행과 같음)

3.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 -----

제12조(시설물 철거)

① 1.~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 내에 설치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6항, 별표2 개정사항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별표 2】		
위 반 행 위	관련규정	벌점	위 반 행 위	관련규정	벌점
1.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5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단,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시설물을 운영자 또는 그 직계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3.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행위 4.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5.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행위. 다만,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6.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7. 구두수선대에서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가공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밖의 물품을 취급·판매하는 행위 8. 구두수선대에서의 제9조제3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u>《신설》</u>	제9조제3항제3호 제9조제3항제4호 제9조제3항제5호가목 제9조제3항제5호나목 제9조제3항제5호다목 제9조제3항제5호라목 제9조제3항제6호가목 제9조제3항제6호나목	30	1.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5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단,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시설물을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3.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행위 4.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5.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행위. 다만,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6.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7. 구두수선대에서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가공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밖의 물품을 취급·판매하는 행위 8. 구두수선대에서의 제9조제3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9. 시설물의 지정된 장소에 운영자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3항제3호 제9조제3항제4호 제9조제3항제5호가목 제9조제3항제5호나목 제9조제3항제5호다목 제9조제3항제5호라목 제9조제3항제6호가목 제9조제3항제6호나목 제7조제2항	40
1.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허가받은 점용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물건을 적치·판매하는 행위 3. 시설물 외벽에 상품 등을 과다 진열한 후 시설물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제1호 제9조제3항제2호	20	1.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허가받은 점용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물건을 적치·판매하는 행위 3. 시설물 외벽에 상품 등을 과다 진열한 후 시설물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제1호 제9조제3항제2호	30
1.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운영자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10	<u>《삭제》</u> 1. 시설물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3항	10

(별지 제3호서식)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시설물을 **“을”**에게 대부하고 **“을”**이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갑”이 **“을”**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종류 ()	관리번호	○○○○년 - ○○구 - ○○○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번지 호 앞 (주요건물명 기재)
	시설물규격	가로 (m)×세로 (m)×높이 (m)
	취급품목	

제3조(대부기간) (생략)

제4조(대부료 등)

- ① 대부료는 연간 _____ 원으로 한다. 다만, **“을”**이 원하는 경우 대부금액의 연 6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월할 계산에 있어 1 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생략)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 ① **“을”**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은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구청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이하 **“임차자”**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대부자”**가 시설물을 **“임차자”**에게 대부하고 **“임차자”**가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대부자”**와 **“임차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대부자”가 **“임차자”**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종류 ()	관리번호	○○○○년 - ○○구 - ○○○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주요건물명 기재)
	시설물규격	가로 (m)×세로 (m)×높이 (m)
	취급품목	

제3조(대부기간) (현행과 같음)

제4조(대부료 등)

- ① 대부료는 연간 _____ 원으로 한다.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 ① **“임차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자”**는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을”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직계가족 중 1명**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5.~8. (생략)

제7조(취급 금지품목)

“을”은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갑”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4. (생략)

제8조(공과금)

“을”은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갱신) (생략)

제11조(지도·감독)

① “갑”은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임차자”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5.~8. (현행과 같음)

제7조(취급 금지품목)

“임차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대부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4. (현행과 같음)

제8조(공과금)

“임차자”는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임차자”는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임차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부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갱신)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도·감독)

① “대부자”는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자”는 이에 응하여야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

1. “을”이 납부기한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갑”이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생략)
3. 「도로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생략)

제12조의2(대부료의 환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을”이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해당 계약에 의해 납부한 연간 대부료 중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을”에게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 ① “갑”과 “을”은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갑”과 “을”의 화해사항을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 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
- ② 화해비용은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생략)

제16조(계약의 효력 등)

- ① (생략)
-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대부자”는 “임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자”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

1. “임차자”가 납부기한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대부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현행과 같음)
3.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부료의 환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대부자”는 “임차자”가 해당 계약에 의해 납부한 연간 대부료 중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임차자”에게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대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 ① “대부자”와 “임차자”는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부자”와 “임차자”의 화해사항을 “대부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 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
- ② 화해비용은 “대부자”와 “임차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현행과 같음)

제16조(계약의 효력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갑) : 서울특별시 ○○○구 청 장
○○○ (인)

임차인(을) :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번지 호

생년월일 :

성명: (인)

작성하여 “대부자”와 “임차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대부자) : 서울특별시 ○○○구 청 장
○○○ (인)

임차인(임차자) :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생년월일 :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 운영자 증명서

- 관리번호
- 운영기간 ~
- 장 소 동 번지 호 (주요건물 기재)
- 취급품목
- 운영자

천 연 색 사 진 (가로3cm×세로4cm)	천 연 색 사 진 (가로3cm×세로4cm)
(성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 ○ 구 청 장

※ 규격 : 12cm × 16cm

(별지 제6호 서식)

() 운영자 증명서

- 관리번호
- 운영기간 ~
- 장 소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주요건물 기재)
- 취급품목
- 운영자

천 연 색 사 진 (가로5cm×세로7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천 연 색 사 진 (가로5cm×세로7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성 명 >	< 성 명 >
< 운영자 본인 >	< 대리운영자 (운영자와의 관계) >

위 사람은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 ○ 구 청 장 [직인]

※ 이 시설물은 조례 제5922호에 따라 위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신고처 : ○○구청 ○○과 ☎ 02-0000-0000)

※ 규격 : 17cm × 20cm

(뒷면)

유 의 사 항

1.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이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의 사용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전대·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장소를 이전해서도 아니 됩니다.
3.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뒷면)

유 의 사 항

1.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이 증명서를 게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의 사용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전대·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장소를 이전해서도 아니 됩니다.
3.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설》

(별지 제7호 서식)

() 운영자 증명서

- 관리번호
- 취급품목
- 운 영 자

<p>천 연 색 사 진 (가로9cm×세로12cm) 압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p>
<p>< 성 명 ></p>
<p><운영자 또는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p>

※ 이 시설물은 조례 제5922호에 따라 위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신고처 : ○○구청 ○○과 ☎ 02-0000-0000)

※ 규격 : 17cm × 20cm